輸出代行契約書(完全)

수출대행자(갑)	수출위탁자(을)
무역업고유번호 :	사업자등록번호

주 소: 주 소: 상 호: 상 호: 대표자: 대표자:

수출대행자 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수출위탁자 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.

다 음

제 1 조(대행내용)

"갑"은 "을"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출 대행한다.

품.	명	규격	수량	단위	단가	급	액	L/C 또는 계약번호	선적기한	刊	고

제 2 조(대행의 범위)

- 1. "갑"은 "을"의 요청에 따라 수출대행하고 "을"이 수출물품을 제조·생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"갑"의 명의를 사용 무역금융 등의 융자를 받아 "을"에게 제공하고 기타 수출에 대한 지원혜택이 있을 때 "을"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"갑"의 명의를 대여해 주어야 한다.
- 2. "갑"은 수출승인,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출절차를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하다.
- 3. "갑"이 선적 완료 후 "갑"의 명의로 작성된 운송서류에 의해 은행에서 운송서류 매

입(NEGO) 후에 회수한 수출대전 외환증서 등은 "을"의 소유로 한다.

- 4. "을"은 본인의 명의로 수취한 신용장(또는 D/A, D/P 계약서 및 주문서(송금방식의 경우)) 등을 "갑"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거나 외국의 원계약자(수입자)로부터 재발행 받아 "갑"이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5. "을"은 수출대행물품을 제조·생산하고 "갑"이 요구하는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.

제 3 조(대행수수료)

"을"은 본 계약에 따라 수출대행수수료로서 미화(US \$) 1\$당 원씩 계산하여 (또는 수출대행물품 가액 총 US \$의 %) 일금 원정(₩)을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"갑"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
제 4 조(계약보증금)

"을"은 본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수출대행물품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(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전신환매입율 기준) 금액의 %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원정(₩)을 현금, 유가증권, 부동산,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"갑"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제15조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할 시는 "을"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이행보증금은 "갑"에게 귀속된다.

제 5 조(계약문서)

계약문서는 본 계약서, "을"이 "을"의 명의로 수취 후 "갑"에게 양도한 신용장(또는 주문서, D/A 계약서, D/P 계약서) 등으로 구성한다.

제 6 조(계약기간)

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, "갑", "을"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제 7 조(물품의 납품)

"을"은 "갑"의 지시에 따라 수출대행물품을 제조·생산한 후 "갑"이 요구하는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,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수출대행물품의 망실, 파손 등으로 "을"의 부담으로 한다.

제 8 조(물품의 검수)

- 1. "을"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출대행물품을 인도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"갑"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 - 가. 검사는 품질, 수량, 하인, 포장 등에 관하여 행한다.
 - 나.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, 하역비,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로 인한 변형, 손모,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"을"의 부담으로 한다.
- 2. "갑"은 제1항의 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될 시 동 물품의 대체납품 등 "을"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.
- 3.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제9조의 선적기한이 연장될 경우 제11조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 9 조(물품의 선적)

"을"은 본건 선적을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선적하기로 한다.

제10조(대행수수료의 지급)

"갑"은 제9조의 선적기한 내에 수출대행물품을 선적하고 그 선적일로부터 일 이 내에 당해 운송서류를 은행에 매입하고, 그 운송서류 매입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"을"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체상금)

"을"이 제7조에서 정한 수출대행물품의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8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 "갑"은 "을"에게 매 지체일 수당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수출대행물품의 총가액이 1,000분의 3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을 징구할 수 있다. 다만, 그 지체사유가 "갑"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물품의 보증)

- 1. "을"은 제8조의 물품의 검수와는 별도로 수출완료 후 운송서류의 선적일로부터 1 년간 수출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 등이 제5조에서 정한 계약문서상의 계약내용과 동 일함을 보증한다.
- 2. "갑"은 1항의 기간 내에 만일 수출물품의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해외의 원계약자(수입자)로부터 물품의 대체수출을 요구받거나 또는 수출대금의 반 환 등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, 동 사항을 즉시 "을"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3. "을"은 2항의 경우 "갑"의 요구에 따라 당해물품의 대체수출 또는 당해물품의 수출 대금을 "갑"에게 반환하는 등 "갑"이 해외의 원계약자(수입자)로부터 클레임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, 이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(대체수출물품의 대가와이에 따르는 경비, 클레임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등)은 "을"의 부담으로 한다.

제13조(권리의무의 양도)

"을"은 "갑"의 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4조(특허 및 상표)

"을"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 의 책임을 진다.

제15조(계약의 해제)

- 1. "갑"은 "을"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가. 제7조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수출대행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 한 때
 - 나. "을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납품기한 내에 인도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하다고 인정될 때

- 다.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- 2. "을"은 "갑"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2조 1항 및 2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 등 "갑"의 수출대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3. "갑"과 "을"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, 일부 선적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"을" 은 "갑"에게 제3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6조(계약내용의 변경)

본 계약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"갑"과 "을"의 쌍방의 합의하에 당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7조(어구의 해석)

이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"갑", "을"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일반 상관 례에 따른다.

제18조(손해배상)

"갑", "을" 공히 본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,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9조(분쟁의 해결)

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"갑", "을"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, 논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로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. 이 경우 중재인(들)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"갑", "을"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.

제20조(관세등 환급권)

이 계약과 관련하여 "갑"의 명의로 수출 후 관세 등의 환급권이 있을 때 당해 환급 권은 "을"의 소유로 하며, "갑"은 "을"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.

제21조(기타)

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령이나 상관 례에 따라 "갑", "을" 양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9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해결한다.

 20
 .
 .

 수출대행자(갑)
 (인)

 수출위탁자(을)
 (인)